인천시,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수도요금 감면

-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50% 감면, 총 160억 원 규모 -
-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피해지원 및 경제 활성화 적극 도모 -

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**소상공인 및 자영업자**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요금 **4개월간 50%** 감면(총160억 원 규모)

□ 감면개요

○ 목적 :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**소상공인 및 자영업자** 지원

○ 내용 : 수도요금(상 · 하수도요금, 물이용부담금) **50%** 감면

○ 기간 : 4개월(3월~6월 사용분)

○ 대상 : **일반용 등 전 업종**

*** 가정용, 관공서, 학교, 군부대, 공공기관, 대규모 사업장(월 500톤 이상 사용) 제외**

○ 규모 : **160억 원**(월 40억 원 × 4개월, 재난관리기금 전액 지원)

○ 방식 : 별도 신청 없이 직권 감면

* 단, 대규모 사업장 내 소상공인 등 감면 배제된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검토

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수도요금을 4개월간 50% 감면해 드리겠습니다. 3월부터 6월까지의 수도 사용량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요금이 감면된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.

월간 물 사용량 500톤 미만의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, 별도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 조치됩니다.

다만, 물 사용량이 500톤 이상이더라도 소상공인 등이 입점해 있는 경우 신청에 의하여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참고 | **수도요금 예상 감면액(상·하수도요금, 물이용부담금 포함)**

□ 총 감면 금액 : 160억원(월 40억원 × 4개월)

○ 피해업종 중 **요식 등 서비스업을 중심**으로 **약 160억원** 규모 감면

(전년 동기 대비 부과액, 1개월 50% 감면시) 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합 계		상수도		하수도		물이용부담금	
	부과	**감면**	부과	**감면**	부과	**감면**	부과	**감면**
일반용	8,017	**4,008**	3,992	**1,996**	3,277	**1,639**	748	**374**

※ 제외대상: 가정용, 관공서, 학교, 군부대, 공공기관, 대규모 사업장(월 평균 500㎥이상 사용 대수요가)

○ 감면대상 수용가 : **약 78,880건**(일반용 81,376건 중 **약 96.9% 감면** 혜택)

구분	건수	비고
전체 일반용 수용가	81,376	
감면대상 수용가	**78,880**	월평균 500㎥ 미만 사용 (감면비율: **96.9%**)

※ 월 평균 500톤 이상 사용 수용가 : 약 2,496건(3.1%)

○ 수용가 별 평균 감면액 : **약 203,240원(월 50,810원 × 4개월)**

(1개월 감면액) (단위 : 원)

구분	합계	상수도요금	하수도요금	물이용부담금
감면액	50,810	25,300	20,780	4,730

※ 월 평균 감면액 50,810원 = 전체 감면액 4,008백만원 ÷ 감면대상 78,880건

- 감면액 예시 : 월 평균 50톤 사용시 약 185,000원(46,250원 × 4개월)

(1개월 감면액) (단위: 원)

사용량(㎥)	10	30	50	100	200	300
부과액	19,290	55,890	92,490	183,990	444,990	705,990
감면액	**9,650**	**27,950**	**46,250**	**92,000**	**222,500**	**353,000**

※ 월 50톤 사용 서비스업(요식, 미용, 학원 등) 기준으로 185,000원(46,250원 × 4개월)감면 효과

※ (최대감면금액) 월 499톤 사용 기준으로 2,550,280(637,570원 × 4개월) 감면 효과

Q & A 요금 감면

① 요금 감면의 취지는?

□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

② 요금 감면 대상은?

□ 고지서에 표시된 '**상수도업종**'이 '**일반용**' 또는 '**욕탕용**'인 수용가 중

○ 2019년 월평균 **물 사용량이 500톤 미만**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.

○ 다만, 대수요가*라 할지라도 소상공인들이 입점해 있다면 신청에 의해 그들의 사용량 비율만큼 감면 대상이 됩니다.

* 전년도 월평균 물 사용량 500톤 이상 수용가

□ 고지서에 일반용 또는 욕탕용으로 표기되어 있어도, 실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부분이 있다면, 그 금액만큼은 제외하고 감면됩니다.

○ 즉, 1개의 수도전으로 '가정용'과 '일반용'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, 가구분할에 의해 1가구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 요금으로 부과하므로, 해당 가정용 요금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용 요금만 감면됩니다.

②-1 2019년 월 평균 사용량은 어떻게 확인하나요?

□ "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"에서 수도요금 납부(납입)내역 신청"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월별 사용량을 확인하는 방법은, "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(www.incheon.go.kr/water)-사이버민원센터-민원서비스에서 "수도요금 납부(납입)내역 확인 신청"(기간: 19년1월~12월)하시면 됩니다.

②-2 ‘신청’에 의해 감면 대상이 된다면, 신청 서식은?

□ 신청방법 및 신청서식은 준비중에 있습니다. 확정되면 인천광역시청 및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
③ 왜 500톤이라는 기준을 세웠나요?

□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에게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지원을 하고자 기준이 필요했으며,

○ 그 기준이 ‘인천광역시 상수도요금 부과징수업무 처리규정’ 제31조에 의한 ‘**대수요가**’(전년도 월평균 500톤 이상 사용 수용가)입니다.

④ 요금 감면 기간은?

□ **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하신 물**에 대하여 4월부터 7월까지 요금 감면이 적용된 고지서를 받아보시게 됩니다.

○ 수용가마다 검침일이 다르므로 사용기간도 각자 다릅니다.

예) 검침일이 3월 28일인 경우 사용기간은 2.29. ~ 3.28.이며 감면된 고지서는 4월 중순경 받아보시게 됩니다.

⑤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한 절차는?

□ **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** 상수도사업본부 직권으로 감면 적용됩니다.

○ 단, 대수요가 내 소상공인의 경우 직권 감면이 되지 않으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**관할 사업소에** 요금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
⑥ 소상공인이 입점해 있는 대수요가는 왜 직권 감면이 안 되나요?

□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대형 상가 등에 설치된 하나의 수도전을 몇 명의 소상공인이 사용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.

○ 관리비 부과자료 등 입증 자료를 통해 인정되는 만큼 감면 적용해 드리겠습니다.

⑦ 요금 감면 혜택은 얼마나 됩니까?

□ 총 **78,880전** 수용가에 대하여 160**억원(월 40억원)** 정도 감면이 됩니다.

○ 수용가는 평균적으로 **4개월간 20만원(월 5만원)**의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.